

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절의 절명 “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및 신고”를 “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”으로 한다.

제30조(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)중 제1항내지 제3항 본문을 삭제한다.

제43조(벌칙) 제1항중 “제28조내지”를 “제28조와 제29조 및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내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